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조경태·이헌승·백종헌

김성원 · 이인선 · 박성민

김도읍 • 배준영 • 이양수

윤상현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을 말한다)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중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상시거주주택"이라 한다)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상시거주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주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9(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을 말한다)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중 상시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상시거주주택"이라 한다)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시거

주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 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 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 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거 주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